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3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년 10월 8일
- 나. 제출자 : 강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0일
- 라. 상정일자 :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재상정·의결(2018.11.28.)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 제안이유

- 가. 행정안전부 산정 행정수요 변화율 대비 기구수 조정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1,575명 → 1,598명 (+2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544명 → 1,567명 (+2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1명 (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3조 관련 별표 3)

○ 정원 총계 : 1,575명 → 1,598명 (+23명)

○ 일반직 계 : 1,570명 → 1,593명 (+23명)

- 4급 : 7명 → 8명 (+1명)

- 5급 : 66명 → 70명 (+4명)

- 6급 이하 : 1,495명 → 1,513명 (+18명)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8. 27. ~ 9. 17.) 결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사전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정우숙)

가. 개정 취지

본 개정안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및 민선 7기 구정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 인력 운영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안 제2조] 정원 총수 조정

- 정원의 총수를 기존 1,575명에서 1,598명으로 23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을 1,544명에서 1,567명으로 23명 증원
- ※ 의회사무기구 정원 변동 없음

2) [안 제3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 정원 총계를 1,575명에서 1,598명으로 23명 증원
- 일반직 계를 1,544명에서 1,567명으로 23명 증원
 - 4급 7명을 8명으로 1명 증원
 - 5급 66명 70명으로 4명 증원
 - 6급 이하 1,495명을 1,513명으로 18명 증원

3)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다. 종합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위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별¹⁾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책정해야 하고 그 책정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1) 정원의 관리기관은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보건소), 동으로 구분함.

-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정원 총 수와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정원의 총 수를 23명 증원하여 1,589명으로 하고 4급을 1명, 5급을 4명, 6급 이하를 18명 증원하는 것임.
- 위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에는
 -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2조(정원채정의 일반기준)에서는
 -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
 -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
 - 1개 직위에 1개의 직급 부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위 사항을 검토한 바, 본 개정안의 정원의 증원은 상위규정에서 정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으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해서는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자료

○ 자치구별 인구수 및 공무원(정원)수 현황

(단위 : 명)

구별	인구수	공무원수 (정원)	공무원1인당 인구수	공무원1인당 인구수 순위
송파구	673,161	1,589	424	1
강서구	606,981	1,575	385	2
노원구	553,177	1,487	372	4
강남구	551,888	1,475	374	3
관악구	521,960	1,468	356	6
은평구	489,045	1,380	354	7
양천구	471,026	1,305	361	5
성북구	451,829	1,480	305	12
서초구	443,989	1,491	298	13
구로구	440,305	1,313	335	8
강동구	437,050	1,363	321	9
중랑구	410,296	1,331	308	11
동작구	407,275	1,307	312	10
영등포구	404,501	1,405	288	15
마포구	385,507	1,412	273	17
광진구	370,519	1,268	292	14
동대문구	364,527	1,337	273	18
도봉구	344,096	1,231	280	16
강북구	326,063	1,309	249	20
서대문구	323,261	1,278	253	19
성동구	316,068	1,275	248	21
금천구	252,752	1,134	223	22
용산구	245,245	1,262	194	23
종로구	163,569	1,216	135	24
중구	135,427	1,229	110	25

※ 2018년 7월 현재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부칙을 수정하여 조례의 시행 시기를 2월 1일로 조정함

나. 수정 주요내용

안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19년 2월 1일”로 수정

※ 붙임 관계법령 1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